경제관계장관회의('17.11.29)

석유제품 유통 투명성 제고 방안

2017. 11. 29

관계부처 합동

국 방 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
국토교통부 해 양 수 산 부 관 세 청

목 차

Ⅰ. 수립 배경 ····· 1

Ⅱ. 현황 및 문제점 ····· 2

Ⅲ. 추진 전략 ····· 5

Ⅳ. 추진 과제 ····· 6

1. 가짜석유 유통 대응체계 마련 ····· 6
2. 면세유·유가보조금 불법행위 근절 ····· 10
3. 품질검사 사각지대 관리 강화 ····· 12
4. 석유유통시장 검사·확인 제도 개선 ····· 14

Ⅴ. 기대효과 ····· 16

Ⅵ. 향후계획 ····· 17

< 붙임 : 과제별 추진일정> ····· 18

try of Trade,
try and Energy

김혜련 / 홍보담당관 / 2017-11-29 10:18:56

Ⅰ. 수립 배경

□ **가짜석유는 유종간 혼합만으로 제조가 가능**하며 거래에 따른 부당 이득(탈세액)이 크기 때문에 **유통이 쉽게 근절되지 않고 있음**

* 가짜석유 적발 현황(업소) : ('12) 313 → ('14) 298 → ('16) 250
* 가짜석유 탈루세액(석유관리원 추정) : ('12) 1조 910억원 → ('16) 6,428억원

□ 정부 대책과 **강력한 단속에 따른 풍선효과로** 기존 관리영역을 벗어난 **관리 사각지대**(수입제품, 면세유, 군납유 등)**에서 불법행위 증가**

< 관리 사각지대 불법행위 사례 >

① 정제연료유로 **위장수입된 석유중간제품을 가짜석유제품 제조에 사용**
* 석유관리원, 부산세관 등이 위장 수입제품 54만ℓ 적발('16년)

② 농·어민에게 공급되는 **면세유가 과세유로 둔갑되어 거래**되거나, **석유사업자가 가짜석유를 농·어민에게 면세유로 속여 공급**
* 내수면 어업용 면세유를 과세유(일반유)로 18만ℓ 불법 유통('17.2)
* 면세유 공급 주유소가 버섯재배 영농법인에 가짜석유 공급('17.2)

③ 윤활유 등 **군납 석유제품의 품질위반** 사례 증가
* 국방규격 미달 수입 윤활유 군 납품(43회, 15억원 상당) 적발('17.5)

□ **불법석유제품 관리 사각지대에 대한 촘촘한 대책을 수립**하여 **석유제품 불법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유통 투명성 제고**

○ 가짜석유, 품질 부적합 등 불법석유 유통으로부터 **소비자안전 확보**

○ 면세유 탈세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해 **재정건전성 제고**

< 국가재정전략회의('17.7.20) 대통령님 말씀 >

◇ 재원조달과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**강도 높은 재정개혁이 꼭 필요**

◇ **많은 예산사업들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를 철저히 점검**하여 현재의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

Ⅱ. 현황 및 문제점

구 분	그동안 추진현황	문제점
가짜석유	• 석유제품 수급보고제 도입 • 용제 유통관리 강화 ⇨ 가짜휘발유 유통질서 확립	• 등유 법정식별제 제거 • 공사장, 차고지 등 이동판매 ⇨ 가짜경유 판매행위 지속
농·어업용 면세유	• 면세유 구입카드 도입 • 어업용 면세유 착색제 혼합 • 면세유 부정수급 지도·단속	• 면세경유에 등유 혼합판매 • 용도 外 사용, 타인양도 ⇨ 부정 수급사례 지속 발생
유가보조금	• 유가보조금 카드사용 의무화 • 거래패턴 실시간 모니터링 •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도·단속	• 카드깡, 다른 차량 주유 • 주유 후 연료 추출 판매 ⇨ 부정수급 근절에 한계
관리 사각지대	• 수입제품 관세청 단독확인 • 군납 석유 관리체계 미비	• 경유를 정제유로 위장수입 • 군납(미군) 석유 정량미달 공급 ⇨ 관리 사각지대 발생
제도 미비	• 항공유 품질기준 없음 • 윤활유 일부 품질검사 제외 • 차량용 LPG 정량검사 미비	• 품질미달 윤활유 유통 • 정량미달 LPG 유통 우려 ⇨ 소비자 피해발생 우려

try of Trade,
try and Energy

김혜련 / 홍보담당관 / 2017-11-29 10:18:56

1 가짜휘발유는 근절 추세이나 가짜경유는 지속 유통

○ 석유사업법 개정 등 그동안 강력한 대책이 시행됨에 따라 가짜 휘발유 대폭 감소 등 **석유시장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이 가시화**

- 특히, 수급·거래상황 주간보고제 도입('14.7월), 용제(가짜휘발유 원료) 관리 강화 등에 따라 **용제를 혼합한 가짜휘발유는 근절 추세**

* 가짜휘발유 적발현황 : ('11) 155 → ('13) 20 → ('15) 10 → ('17.9월) 4

○ 다만, 경유에 등유를 혼합한 **가짜경유와 등유를 자동차 연료로 불법 사용**하는 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지속 발생

* 자동차용 연료로는 휘발유와 경유만 사용 가능하고 등유는 사용이 금지

- 경유와 등유의 혼합 여부를 판별하기 위한 **법정식별제를 제거** 후 가짜경유를 제조하여 **공사현장과 버스 차고지에 이동판매**

2 면세유 불법 유통, 가짜석유의 면세유 유통 등 불법행위 지속

○ 농·어업용 면세유는 **농·어업인의 영농비와 수산업 부담 경감***을 위해 석유류에 부과되는 교통세 등 **각종 세금을 면제하여 공급**

* (지원 대상) 농업용 트랙터, 콤바인, 경운기 및 어업용 선박, 양식어업용 시설 등

○ 그동안 면세유류의 관리를 위해 **면세유 구입카드 도입**, 면세유(어업용) 공급 시 **착색제 혼합**, 면세유 **부정수급 지도·단속*** 시행

* 농업용(농식품부) : 농산물품질관리원 / 어업용(해수부) : 어업관리단

○ 그러나, 면세 경유에 **등유를 혼합하는 사례가 증가***하고 있고 용도 外 사용, 타인양도, 부정수급 등의 **불법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**

* 석유관리원·농관원 합동점검('17. 4월) 결과 주유소 9개 중 6개가 가짜경유 공급

3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지속

○ 에너지세제 개편('01.6)으로 **경유·LPG 세율**을 **단계적으로 인상**하며 **운송업계의 부담 완화***를 위해 **유가보조금을 지급 중**

* 화물운송사업자의 화물차에 대하여 경유 346원/ℓ, LPG 198원/ℓ 지급 등

○ 유가보조금 **카드사용 의무화**('09.5), 거래패턴 **실시간 모니터링** ('10.2) 등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여러 대책을 시행

○ 그러나, 주유량·주유내역 등 주유정보, 주유 후 연료 추출 여부 등에 대한 파악이 곤란하여 **부정수급 완전 근절에는 한계**

* 카드깡, 다른 차량 주유, 등유 주유 등 연간 4천여건(약 40억원)의 부정수급 적발

4 가짜석유 원료의 위장수입, 군납유 불법유통 등 관리사각 지대 발생

try of Trade
try and Energy

○ 교통세 회피를 위해 **품질부적합 경유를 정제유로 위장 수입 후** 가짜석유 원료로 사용(14백만 리터, 168억원)하여 공급('16.3월)

○ 군납 경유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**가짜석유나 정량미달로 공급**

* 유량계(oilmeter)를 조작하여 미군에 경유를 정량미달(39건)로 공급('16.5월)

5 항공유·윤활유 품질관리 체계와 LPG 정량검사 제도 미비

○ **항공유는 품질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품질검사 미실시**

○ 윤활유는 수출입업 등록 대상에서 제외되어 **유통관리에 한계**가 있으며 **정제광유* 함유량 70% 미만은 품질검사 대상에서 제외**

* 광유(mineral oil) : 원유 정제 과정에서 생산되는 윤활유(엔진오일 등) 제조원료

○ 휘발유·경유와 달리 **LPG차량 연료**(부탄)**에 대한 정량검사** 제도가 없어 **정량미달 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발생** 우려

김혜련 / 홍보담당관 / 2017-11-29 10:18:56

Ⅲ. 추진전략

비전 석유제품 유통 투명성 제고로 재정건전성 및 안전 확보

목표 '18년까지 석유제품 관리·검사 사각지대 해소

	추진전략	세부 추진과제
추진 전략 및 과제	가짜석유 유통 대응체계 마련	· 신규 법정식별제 도입 · 석유제품 수급상황 모니터링 강화 · 가짜석유 신고포상제 확대 · 가짜석유원료 수입관리 강화
	면세유·유가보조금 불법행위 근절	· 농·어업용 면세유 부정수급 방지 · 유가보조금 유류 불법행위 점검 강화
	품질검사 사각지대 관리 강화	· 군납 석유제품 품질관리 기반 구축 · 항공유 및 윤활유 품질관리 강화
	석유유통시장 검사·확인 제도 개선	· 불법의심 연료 역추적 관리 · 액화석유가스(LPG) 정량검사 도입 · 석유제품 교통세·개소세 환급확인 강화

Ⅳ. 추진과제

전략 1 가짜석유 유통 대응체계 마련

1-1 신규 법정식별제 도입

□1 **신규 법정식별제 등록 및 실증테스트 실시**

○ 식별제를 **신규물질로 등록하고 유해성 심사**('17. 8~12월, 환경과학원)

○ 신규 식별제 현장적용을 위한 **실증테스트**(field test) **실시**('17.8~10월)

- 투입 유종(등유, 부생연료유) 대상으로 신규 식별제의 안정성, 제품간 간섭, 시험분석 방법, 농도변화 등 **현장 적용에 필요한 검증 실시**

try of Trade,
try and Energy

□2 **신규 법정식별제 공급기반 구축**

○ 신규 법정식별제 **투입 유종 및 사용방법 선정**('17.하)

- 가짜석유로 혼입가능성이 있는 **대상 유종**(등유, 부생연료유 등)**과 현행 식별제**(Unimark 1494 DB)**와의 병행 사용 여부 등을 확정**

○ 신규 식별제 혼입 **석유제품**(등유·부생연료유)**의 품질기준 개정**('18.상)

- **석유제품 품질기준 개정**을 위한 **품질관리심의위원회 심의**

* 신규 법정식별제 투입 함량 및 시험분석 방법 등을 검토

-「**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**」(산업부 고시)**를 개정**('17.12월)하고 일정기간(6개월) 유예 후 시행

김혜련 / 홍보담당관 / 2017-11-29 10:18:56

1-2 석유제품 수급상황 모니터링 강화

1 수급보고 전산보고용 중계 소프트웨어 고도화

○ 산업부·지자체·석유관리원 합동으로 **주유소 수급보고 실태점검**('17.하)

- 수급보고시스템 개선과제 발굴, 전산보고 참여·유지를 위한 의견 수렴

○ **전산보고용 중계 소프트웨어를 개선**하여 사용자편의 제고('19.상)

* 재고관리기능 강화(면세·이동판매물량 추가 등), 보고내역 출력기능 개발 등

2 석유중간제품 수급·거래상황 모니터링 강화

○ 제품별 구분 없이 수급 보고되고 있는 석유중간제품의 일부(PFO, 석유제품 유분 등)가 **가짜석유 원료와 보일러의 연료로 사용**

* '12.8~'15.10 석유중간제품(경유 유분)과 경유를 혼합제조한 가짜경유 7,380만 리터(1,000억원 상당) 유통('17.11)

⇨ 중간제품을 제품별로 관리할 수 있도록 **수급보고 대상 세분화**('18.상)

* 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」(별표8) 개정

○ **석유중간제품 수급보고 대상기관 변경** (석유공사 → 석유관리원)

- 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」을 개정('18.하)하여 중간제품 **수급보고 대상기관을 석유공사에서 석유관리원으로 변경**

3 「석유제품 수급보고제도 중장기 발전전략」 수립

○ 석유제품 수급보고제와 전산보고의 3년간('14.7~'17.6) 운영성과 분석

* '14.7월 수급보고기간 단축(月→週) 및 전산보고 도입에 따른 운영성과 분석

⇨ **인센티브 및 지원*** **확대 등 전산보고 확대 전략 수립**('18.상)

* POS(Point of Sale) 연동이 불가능한 노후 주유기 메인보드 교체비용 지원 등

1-3 가짜석유 신고포상제 확대

1 가짜석유 신고포상금 지급액 및 지급범위 확대

○ 가짜석유 제조·판매 행위 **신고포상금 지급액 2 ~ 4배 상향**

- 가짜석유의 **제조량과 판매량에 따라 신고포상금 상한을 확대**

* (가짜석유 제조) 500만원 → 1,000만원 / (가짜석유 판매) 50만원 → 100만원

- **영업시설을 개조한** 가짜석유 판매는 **포상금을 200만원까지 확대**

○ **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 확대**('18.하)

- **등유, 부생연료유, 선박용 경유 등을 차량·기계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**를 신고할 경우 **신고포상금 대상에 포함**

try of Trade
try and Energy

2 가짜석유 신고접수 체계 개선 및 홍보 강화

○ **가짜석유 신고접수 채널을 다양화**하여 신고 편의성 제고('17.하)

- 모바일 소비자신고접수시스템*, ARS 신고접수 시스템 등 구축

* 24시간/365일 언제 어디서나 신고 접수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·운영

○ **가짜석유 소비자신고 제도 홍보 강화**('18.상)

- 가짜석유 **소비자신고 제도**에 대한 **홍보매체 확대**(TV, 라디오 등)

- 가짜석유의 환경·안전상 폐해, 소비자 신고 방법, 신고포상금제 등에 대한 **홍보 강화**

김혜련 / 홍보담당관 / 2017-11-29 10:18:56

1-4 가짜석유원료 수입관리 강화

1 석유제품 통관 시 관세청-석유관리원간 정보공유

○ 석유관리원은 관세청에 가짜석유 취급의심업자 월 1회 제공('18.상)

- 관세청은 해당 정보를 활용하여 **수입신고 시 확인점검 대상 선별**

○ 관세청은 가짜석유 원료전용이 가능한 품목(정제유, 윤활기유 등)의 **수입통관정보를 석유관리원에 월 1회 제공**('18.상)

- 통관물량, 업체정보 등을 통관완료 1개월 이내 공유하고 공유품목은 가짜석유 제조 유형을 고려하여 매년 조정

- **관세청-석유관리원간 협력MOU 체결** 후 세부절차 마련('18.상)

< 가짜석유 원료 수입통관 사례 >

○ 싱가포르産 **품질부적합 경유를 기타제품으로 수입 후** 가짜경유 원료로 공급

＊ 전북 정읍, 충남 공주 등에서 1,400만 리터(168억원)의 가짜경유 유통 적발 및 원료물질 27만 리터 압수('16. 3, 서울지방경찰청 등)

○ **석유제품 수입 시 허위신고 여부 확인을 위한 시험분석 협력**

- 관세청 요청시 석유관리원이 수입품목에 대해 시험분석 지원('18.하)

2 석유제품 수입 후 가짜석유 원료 전용여부 점검체계 구축

○ 가짜석유원료 전용 현장 확인·점검을 위한 추진계획 수립('18.상)

- 관세청 통관정보와 석유관리원 수급보고 데이터를 분석하여 점검 대상 선별 후 의심업체에 대한 **수입원료 불법전용 현장 확인**

전략 2 면세유·유가보조금 불법행위 근절

2-1 농·어업용 면세유 부정수급 방지

1 농·어업용 면세유 합동점검 강화

○ 면세유 **합동점검을 위한 지역별 실무협의체 구성**('18.상)

＊ 농업용 : 석유관리원-농산물품질관리원 / 어업용 : 석유관리원-어업관리단

○ 면세유 부정유통 및 **가짜석유 판매 혐의 업체를 특별 점검**(반기 1회)

- 면세유 판매업자 거래내역과 석유제품 수급보고시스템 데이터를 월 1회 이상 공유하여 **부정유통 위험군을 선별 후 중점 조사**

try of Trade,
try and Energy

2 농업용 면세유 취급주유소 관리 강화

○ 농업용 **면세유 취급 주유소의 거래상황 주간보고를 전산보고로 단계적으로 도입**('18.상)

- 농식품부에서 면세유 취급 주유소를 신규지정 시 **전산보고 의무화**

3 어업용 면세유 품질검사 도입

○ 현재 수협과 수협중앙회가 운영하는 **어업용 면세유 취급소는 석유관리원의 품질검사 대상에서 제외**(수산업협동조합법 제12조)

⇨ 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」을 개정해 수협 및 중앙회에서 취급하는 **석유제품에 대해서도 품질검사 도입**('18.하)

김혜련 / 홍보담당관 / 2017-11-29 10:18:56

2-2 유가보조금 유류 불법행위 점검 강화

1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합동점검체계 구축

○ 관계기관 합동 **「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협의체」 운영**('18.상)

- 국토부, 지자체 등이 年 1회 이상 유가보조금 유류 불법행위* 점검

* 최근 4년간 사용량 부풀리기(카드깡) 4,890건(67억 원), 지급대상 차량 외 자가용 등에 공급·결제 1,388건(12억 원), 등유 주유 687건(27억 원) 적발

- **유가보조금 수급정보 공유**(국토부-석유관리원) **주기 단축**(분기→월)

2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체계 강화

○ **부정수급 환수금과 지급예정 유가보조금을 상계 처리**('17.하)

-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환수금 체납 시 차기에 지급될 **유가보조금에서 부정수급 환수금을 차감**

○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(국토부 ITAS)과 유가보조금 관련 여타 정부기관의 관리 **시스템간 상호 연계* 확대**('19.하)

* 「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」을 개정('18.하)하여 다른 기관 관리시스템인 운전면허 관리시스템, 운수종사자자격관리시스템, 의무보험가입관리시스템 등과 연계

○ **유류구매카드에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금지행위 안내문 게재**('18.상)

○ 주유소의 **유가보조금 유류**(경유) **판매내역**을 **「석유제품 수급보고 시스템」**에 정기적으로 반영하여 **불법행위 점검대상 선별**('19.상)

전략 3 품질검사 사각지대 관리 강화

3-1 군납 석유제품 품질관리 기반 구축

1 군납 석유제품 품질관리체계 구축

○ 군납 석유제품의 **현장 판별력 강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**('18.상)

- 경유와 등유 혼합여부 판별을 위한 **발색제*** **공급 및 판별 기술 지원**

* 등유에 포함되어 있는 법정식별제를 확인하기 위한 화학물질(식별제와 반응시 보라색으로 發色)

○ **군납 석유제품에 대한 품질관리역량 강화**('18.상)

- 軍의 체계적인 석유품질 관리를 위한 **교육*** **프로그램 공동 개발**

* 석유관리원에서 군 석유제품 관리자를 대상으로 석유품질 관리방법 교육

- **軍 석유품질 관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정례화**(年 1회)

2 군납 석유제품 합동점검 강화

○ 군납유 **생산단계**에서 **합동 품질검사**(軍-석유관리원) **강화**('17.하)

- **정유사의 군납 전용 석유제품**에 대해 **정기적인 품질검사 실시**

○ 납품된 석유제품에 대한 **합동 품질검사*** (軍-석유관리원) **정례화**('17.하)

* 항공유에 대한 공군-석유관리원간 합동 품질점검 시범사업 시행 중

- 군납 석유제품 대상으로 **품질이상 유무 확인**(육·해·공군 연간 각 2회)

try of Trade,
try and Energy

김혜련 / 홍보담당관 / 2017-11-29 10:18:56

3-2 항공유 및 윤활유 품질관리 강화

1 항공유 품질관리체계 구축

○ **항공유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**하기 위하여 **품질기준을 마련**

* 현재는 국내 품질기준이 없어 해외기준에 따른 품질의 항공유를 거래

- 해외 주요국 **항공유 품질기준 현황 실태조사**('18.상)
- 품질기준 제정 **워킹그룹 운영 및 품질기준**(산업부 고시) **개정**('18.하)

○ **항공유에 대한 품질검사 신설**

- **석유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**('18.하)하여 **품질검사 근거 마련**
- 검사 품목은 국내 유통되는 AV-Gas, Jet A-1, JP-5, JP-8 등을 대상으로 하되, 의견수렴을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

2 윤활유 품질관리 강화

○ **품질검사 대상 윤활유를** 정제광유(mineral oil) 함유량 70% 이상의 윤활유에서 **모든 윤활유로 확대**

- 합성 윤활유도 품질검사를 받도록 **석유사업법 시행규칙 개정**('18.하)

* 한국산업표준(KS) 인증을 받은 윤활유는 품질검사 대상에서 제외

○ 신고 없이 수출입하고 있는 윤활유에 대해 **수출입업 신고제 도입**('18.하)

- 윤활유 품질검사와 유통관리 강화를 위해 윤활유 수출입업자를 **신고대상 석유사업자에 포함**

* 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」 개정('18.하)

전략 4 석유유통시장 검사·확인 제도 개선

4-1 불법의심 연료 역추적 관리

1 농·어업인 및 유가보조금 수급자 연료품질 확인 서비스* 도입

* 차량·기계에 이상이 발생할 경우 소비자가 농산물품질관리원 등에 시료를 의뢰하면 석유관리원에서 가짜석유 등 이상 유무를 확인해 주는 서비스

○ 농·어업인이 면세유 샘플을 농산물품질관리원이나 어업관리단에 제출하면 **석유관리원에서 품질검사 후 판매자를 역추적**('17.하)

○ 유가보조금 수급 유류(경유)가 의심스러울 경우 **운수사업자가 석유관리원에 품질검사를 의뢰**하는 품질확인 서비스 추진('17.하)

try of Trade,
try and Energy

2 품질점검 서비스* 확대 및 가짜석유 신고포상금 지급

* 이동실험실 차량을 이용하여 소비자 차량 연료에 대해 이상 유무를 확인

○ 이동실험실 차량을 추가제작, 품질점검 서비스를 **4개 권역으로 확대**

* 충청권 신도시(세종) 개발 등에 따른 교통량 증가와 소비자 이용 편의성을 고려하여 현재 3개 권역(수도권, 영남, 호남)에서 충청권 지역으로 확대

○ **항공유 등 특수목적용 유류**에 대해서도 **품질점검 서비스 실시**('17.하)

○ 품질점검 서비스를 통해 가짜석유로 확인되어 제조·판매자를 적발할 경우 **정보제공 소비자에게 가짜석유 신고포상금 지급**('17.하)

김혜련 / 홍보담당관 / 2017-11-29 10:18:56

4-2 액화석유가스(LPG) 정량검사 도입

1 LPG 법정 정량검사 기법 개발

○ **LPG 정량측정 방법*을 개발하고** 현장 정량검사 후 발생하는 **측정가스의 회수처리 방안 마련**('18.상)

* 現 무게측정을 통한 부피환산 방식 외에 배관 유량측정 방식 등 신규방법 검토

2 LPG 법정 정량검사 제도 도입

○ LPG 정량검사 **시범사업** 등을 통해 **정량검사 방안 수립**('19.상)

- 소비자 신고사례, 유사제도, 해외사례 등을 분석('18.하)

○ 정량검사 도입을 위해 **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」에 LPG 정량검사 근거, 위반 시 처벌 규정 등 개정안 마련**('19.하)

4-3 석유제품 교통세 및 개별소비세 환급확인 강화

1 교통세 및 개별소비세 환급확인 강화

○ 수출용 원재료에 부과된 교통세(휘발유·경유)와 개별소비세(등유·중유·LPG 등)의 환급을 위해 **석유관리원에서 원료사용량증명서 발급 중**

* 교통세법과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석유관리원을 수출용 원재료에 사용된 원료사용량증명서 발급기관으로 지정('16.6월)

⇨ 수출용 원재료 사용내역 검증 등 **환급확인 절차 개선**을 위해 **현장점검 실시 등 원료사용량증명서 발급업무 강화**('17.하)

* 연도별 환급액(억원) : ('15) 6.8(10건) → ('16) 218(35건) → ('17.8) 522(55건)

Ⅴ. 기대효과

가짜석유 유통에 따른 탈루세액(약 1,075억원) 방지

○ 신규 법정식별제 도입과 석유수급보고시스템 고도화에 따라 **등유 불법유통 차단으로 연간 약 740억원*(162,500㎘) 세수탈루 차단**

* 등유를 차량용 연료로 불법유통 하는 행위 등의 추정량 기준('16년 기준의 30%)

○ **가짜석유 원료 위장수입 유통 차단으로** 위장수입 후 가짜석유 제조·유통 **탈루액 약 335억원***(2,800㎘) **방지**

* '16.3월 적발 내역(168억, 14백만㎘)을 적용, 연간 2회 적발로 추정

면세유·유가보조금 유류 불법유통(약 430억원) 차단

○ 농·어업용 면세유 취급 석유사업자에 대한 「면세유 합동점검반」을 운영하여 **연간 약 262억원*의 면세유 불법유통 차단**

* '16년 가짜경유 유통(적발률 2%)을 적용, 면세유 세액감면 1조 3,147억원의 2% 수준

○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업소에 대한 **현장 합동점검을 강화**하여 **약 168억원*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**

* 서류확인을 통한 점검('16년 56억원 추정)에서 현장점검으로 3배 이상 증가

소비자 안전확보 및 권익보호(약 80억원)

○ **(안전 확보)** 항공유, 윤활유 등 불량제품 유통 차단으로 **국민 불안 해소**

- 항공유와 윤활유에 대한 품질검사를 통해 품질이 **부적합한 제품의 수입과 불법 유통되는 석유제품의 유통 차단**

○ **(소비자 보호)** LPG 정량검사 도입으로 **소비자 피해 예방**

- 휘발유·경유 유통과정과 같이 0.06% 이상(80억원)의 **정량미달 방지**

* '16년 휘·경유 정량미달 약 0.06%, LPG 소비량 17,325천㎘, 단가 800원/ℓ

try of Trade, try and Energy

김혜련 / 홍보담당관 / 2017-11-29 10:18:56

Ⅵ. 향후계획

□ **관계부처 협력체계 구축**(관계부처, '18.상)

○ 관계부처 **「합동점검 협의체」 구성 등 협력계획 수립**

* 석유제품 불법행위의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해 합동점검 계획 수립 등

○ 면세유, 유가보조금 유류, 군납 유류 등에 대한 **정기 합동점검 실시**

* 합동점검 개선사항은 「합동점검 협의체」를 통해 합동점검 계획에 환류

□ **법령 정비를 통한 관련 제도 개선**(산업부·국토교통부, '18~'19)

○ 석유사업법, LPG법,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등 **관련 법령 개정**

* 어업용 면세유 품질검사('18.하), 항공유 및 윤활유 품질검사('18.하), LPG 정량검사('19.하), 유가보조금시스템과 관계 정부기관 시스템 연계('18.하) 등

□ **불법석유제품 유통 차단 기반 구축**(농식품·산업·국토·해수부, 관세청, '18)

○ 농·어업용 면세유, 유가보조금 지급 유류(경유·LPG) 및 군납 유류에 대한 **합동점검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확보**

○ 면세유 및 유가보조금 유류 판매내역을 석유관리원의 「석유제품 수급보고시스템」상에 반영(update)

□ **과제별 추진상황 점검·관리**(산업부, '18.상)

○ 부처별로 과제 추진상황을 지속 관리하고 개선 필요사항 발굴

○ 시행결과에 대한 점검 및 개선 필요사항 조정·개선

붙임 과제별 추진일정

과 제 명	추진일정	주 관	협 조
1. 가짜석유 유통 대응체계 마련 (산업부, 관세청)			
1-1 신규 법정식별제 도입			
신규 법정식별제 등록 및 실증테스트 실시(1-1-1)	'17년(下)	산업부	석유관리원
신규 법정식별제의 공급기반 구축(1-1-2)	'17~'18년	산업부	석유관리원
1-2 석유제품 수급상황 모니터링 강화			
수급보고 관리보고용 중계 소프트웨어 고도화(1-2-1)	'17~'19년	산업부	석유관리원
석유중간제품 수급·거래상황 모니터링 강화(1-2-2)	'18년	산업부	석유관리원
석유제품 수급보고제도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(1-2-3)	'18년(上)	산업부	석유관리원
1-3 가짜석유 신고포상제 확대			
가짜석유 신고포상금 지급액 및 지급범위 확대(1-3-1)	'17~'18년	산업부	석유관리원
가짜석유 신고접수 체계 개선 및 홍보 강화(1-3-2)	'17~'18년	산업부	석유관리원
1-4 가짜석유원료 수입관리 강화			
석유제품 통관 시 관세청-석유관리원간 정보공유(1-4-1)	'18년	관세청	석유관리원
석유제품 수입 후 가짜석유 원료 전용여부 점검 체계 구축(1-4-2)	'18년(上)	산업부	석유관리원

try of Trade
try and Energy

김혜련 / 홍보담당관 / 2017-11-29 10:18:56

과 제 명	추진일정	주 관	협 조
2. 면세유·유가보조금 불법행위 근절 (농식품부, 산업부, 국토부, 해수부)			
2-1 농·어업용 면세유 부정수급 방지			
농·어업용 면세유 합동점검 강화(2-1-1)	'18년(上)	농림부 해수부	석유관리원
농업용 면세유 취급주유소 관리 강화(2-1-2)	'18년(上)	농림부	석유관리원
어업용 면세유 품질검사 도입(2-1-3)	'18년(下)	산업부	해수부
2-2 유가보조금 유류 불법행위 점검 강화			
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합동점검 체계 구축(2-2-1)	'18년(上)	국토부, 지자체	석유관리원
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체계 강화(2-2-2)	'17~'19년	국토부	석유관리원
3. 품질검사 사각지대 관리 강화 (국방부, 산업부, 국토부)			
3-1 군납 석유제품 품질관리 기반 구축			
군납 석유제품 품질관리체계 구축(3-1-1)	'18년(上)	국방부	석유관리원
군납 석유제품 합동점검 강화(3-1-2)	'17년(下)	국방부	석유관리원
3-2 항공유 및 윤활유 품질관리 강화			
항공유 품질관리체계 구축(3-2-1)	'18년	산업부	국토·국방부
윤활유 품질관리 강화(3-2-2)	'18년(下)	산업부	석유관리원

과 제 명	추진일정	주 관	협 조
4. 석유유통시장 검사·확인 제도 개선 (산업부)			
4-1 불법의심 연료 역추적 관리			
농·어업인 및 유가보조금 수급자 연료품질 확인 서비스 도입(4-1-1)	'17년(下)	산업부	석유관리원
품질점검 서비스 확대 및 가짜석유 신고포상금 지급(4-1-2)	'17년(下)	산업부	석유관리원
4-2 액화석유가스(LPG) 정량검사 도입			
LPG 법정 정량검사 기법 개발(4-2-1)	'18년(上)	산업부	석유관리원
LPG 법정 정량검사 제도 개선(4-2-2)	'18~'19년	산업부	석유관리원
4-3 석유제품 교통세 및 개별소비세 환급확인 강화			
교통세 및 개별소비세 환급확인 강화(4-3-1)	'17년(下)	산업부	석유관리원

try of Trade,
try and Energy

김혜련 / 홍보담당관 / 2017-11-29 10:18:56